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 촉구 건의안

의 안 번 호	1499
------------	------

발의년월일 : 2006. 10. .
제 안 자 : 김 동 규 의 원
외 인

1. 주 문

- 구 「학교용지화보에 관한 특례법」(2000.1.28. 법률 제 6219호) 제2조 제2호 및 동법 제5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 재판소는 2005년 3월 31일 재판관의 전원일치로 헌법상 의무 교육 및 무상성의 원칙과 부담금 부과의 기본원칙 위배,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에 따른 평등의 원칙 위반 등을 이유로 위헌결정을 하였음.
- 그러나 2005.4.29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시달된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 지침에 의하면 쟁송 기간내 이의 제기한 대상자에 대하여 처분청이 환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현행법상 위헌 결정의 효력은 소급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쟁송기간이 경과했을 경우는 환급할 수 없다고 함.
- 이는 정부정책이나 법에 반발하는 사람은 구제를 받게 되는 반면 정부정책을 믿고 순응하는 사람은 구제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으로 법의 타당성이나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 향후 주민들의 조세 저항을 야기하고, 준법의식도 크게 해손될 것임.

- 이와 같은 이유로 안산시의회에서는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하지 못해 돌려받을 수 없는 사람들까지 모두 학교용지부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어, 해당 주민들이 학교용지 부담금을 환급 받을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함.

2. 제안이유

- “학교용지는 의무교육 시행을 위한 물적기반으로서 특정한 집단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여 비용을 충당하는 것은 헌법상 의무교육의 무상성을 선언한 헌법에 반한다”라는 판결로 헌법재판소는 구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호와 및 동법 제5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내렸음.
- 이에 교육인적자원부는 위헌 판결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쟁송기간내 이의제기한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자에 대해 처분청이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하고, 최초 분양계약자에만 환급하라는 지침을 시달하였음.
- 이는 90일 이내에 이의제기한 자만 환급대상이 되며, 이의 제기하지 않은 자는 환급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기 납부자로부터 강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고, 최초 분양계약자에게만 환급하라는 지침으로 많은 항의성 민원이 빗발치고 있어 이로 인해 조세저항 및 집단소송 등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은 전국적인 민원사항으로, 국회 차원의 대책이 요구되므로,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 상정, 계류되어 있는 “위헌결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바임.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 촉구 건의안

우리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학교용지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하지 못해 돌려받을 수 없는 사람들까지 부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어, 해당 주민들이 학교용지 부담금을 환급 받을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함.

1. “학교용지는 의무교육 시행을 위한 물적기반으로서 특정한 집단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여 비용을 충당하는 것은 헌법상 의무교육의 무상성을 선언한 헌법에 반한다”라는 판결로 헌법재판소는 구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호와 및 동법 제5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하여,
2. 이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용지부담금을 쟁송기간내 이의제기한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자에 대해 처분청이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하고, 최초 분양계약자에만 환급하라는 지침을 시달 하였으나,
3. 이는 90일 이내에 이의제기한 자만 환급대상이 되며, 이의 제기하지 않은 자는 환급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기 납부자로부터 강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고, 최초 분양계약자에게만 환급 하라는 지침으로 많은 항의성 민원이 빗발치고 있어, 이로 인해 조세저항 및 집단소송 등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우려가 있어,

4.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은 전국적인 민원 사항으로 국회 차원의 대책이 요구되므로,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 상정, 계류되어 있는 “위헌결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바임.

2006. 11. 3

안산시의회의원 일동